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6월 9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안전국장 박은실)

가. 제안이유

- 조례 적용 범위에 주최·주관자가 없는 지역축제·행사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최·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규정(안 제5조제1항제3호)
-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최·주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규정 (제4항 신설)
- 행사보험가입 및 행사개최 전체비용 대비 1퍼센트 이상 안전관리비 확보에 관한 권고사항 규정(안 제9조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 적용 범위에 주최·주관자가 없는 지역축제·행사를 추가하여 포함하고
-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행사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인 사고 예방과 구민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